#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90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김기표·백혜련·전재수

정준호 • 민홍철 • 신영대

김현정 · 황운하 · 강득구

김 윤 • 한준호 • 추미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75개소 중 대다수가 1989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등 법정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주민 및 종사자가각종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 기능보강에 관한 규정이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주(LH 등)와 사용자(지자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설 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더불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리모델 링 시 국가의 재원 지원 의무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나, 리모델링 실시 여부가 의무조항이 아닌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 법률 제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재난 등으로부터 복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복
	리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u>수 있다.</u>
<u> &lt;신 설&gt;</u>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등으로부터 복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
	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
	<u>는 경우</u>
	3.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_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경우</u>